

##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련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동경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원

### 1 서 론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 6847호)됨으로써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준비사항을 문의해 오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예방 관련 규칙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법의 취지대로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대표가 관련업무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책임을 지고 예방업무를 수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법규의 제정결과를 보면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 제24조제1항 제5호 신설) 하기 위하여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분진 · 흄(fume) · 미스트(mist)-----
2. ~ 4. (현행과 같음)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6. (현행 제5호와 같음)

를 제정하였으며, 구체적 시행을 위해 지난해 노동부에서는 몇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규칙 중 제 13편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안)을 준비해 두고 현재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본 자료에서는 최종 공청회의 (안)을 근거로 하여 발생될 수 있는 조항별 상충되는 문제점과 실제 사업장에서 사업 수행시의 애로사항 및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된 근로자로서의 법적보호 사각지대는 없는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여 본다.

### 2 본 론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상 원인과 결과의 모호성이 존재하고 질환의 발생예측이 어렵다는 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과 상이한 작업형태 때문에 법적 근거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이 분명 쉬운 일이 아님은 틀림없다. 그러나, 근골격계질환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부의 책무이다.

따라서, 현재 준비된 2차 공청회 결과자료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더 나은 제도로 탄생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검토해 본다.

첫째, 근골격계질환관련 보건규칙(이하 규칙)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13편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안)**

**제 1장 통칙**

**제291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순반복작업 또는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 함은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비추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이하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목과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라 함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한다.

**제2장 노사참여와 협력에 의한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

**제292조(유해요인조사)** ①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매 3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정후 및 증상 유무 등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시로 당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질병자 발생시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의 도입시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근로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93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94조(작업환경개선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등)**

- ① 사업주는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간공학분야, 산업의학분야, 작업환경개선분야 등의 관계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295조(통지 및 사후조치)** ①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악력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학적 조치, 제2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6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제29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제29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정후 및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4. 작업도구와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기타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297조(정부의 조치)**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작업관련 근골격계질병자가 연간 10인이상 발생한 사업장
2. 근골격계질병자 발생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있는 사업장
3. 기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시행이 필요한 사업장

### 제3장 중량물 인양작업의 특별조치

**제298조(인양중량의 제한)** 사업주는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중량물의 무게가 남자 근로자인 경우 25킬로그램이하, 여자 근로자인 경우 15킬로그램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9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300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5킬로그램이상의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을 보기 쉬운 부분에 표시할 것
2. 무게중심이 기울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명시할 것
3. 취급하는 물품에 단단한 손잡이를 부착하는 등 다루기 쉽도록 할 것
4. 취급하는 물품에 갈고리, 진공빨판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301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 중심을 낮추거나 인양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제정된 법에 의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규칙의 제 291조(정의)의 각 호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나 1호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的 정의를 규칙에서 분명히 제시하지 않아 이의 정의를 고시 또는 다른 하위 규정에서 정할 경우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규칙 291조 이하의 다른 조항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용어의 정의만큼은 규칙 291조에서 분명히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조의 2호에서는 “근골격계질환”的 정의를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라고 되어 있어 근골격계부담작업이외의 작업에서

발생되는 질환일 경우 사회적 통상개념의 용어인 근골격계질환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현재 농조의 “근골격계질환”을 “직업성 또는 직업(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규칙 제 292조의 2항 1호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질병자 발생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질병자 발생시”로 바꾸어 주어야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를 내릴 때도 노사 공히 지나치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법규대로라면 근골격부담작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바로 근골격계질환 대상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자체의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설사 정의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경직된 제한 규정이 되어 오히려 근로자 보호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상기제안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를 매우 확대하여 정의해두면 사업장에서는 292조 (유해요인조사)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거의 모든 작업과 작업자에 대하여 유해요인관리를 해야 하므로 질환예방을 위한 우선순위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 자체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규칙제정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규칙 제 292조의 2항 1호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질병자 발생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질병자 발생시”로 바꾸고 동시에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는 미국 OSHA 인간공학 프로그램에서 제안한 Action Triggers, 위성턴 주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감시대상 작업 또는 Initial Ergonomic Screen (Moderate Risk Factors) 등 중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준들로 채택할 경우 노사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 291조(정의) 3호에서 정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에 예방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더 추가하여 사업장에서 예방관리 프로그램 작성시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291조 3호를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291조(정의)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라 함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참여, 근골격계질환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 유해요인조

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한다.

셋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은 연간 10인 이상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또는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단순히 “사업주 및 근로자의 참여, 근골격계질환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정의 서류작성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 294조(작업환경개선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등)의 제 2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객관적인 규정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94조(작업환경개선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등)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인간공학분야, 산업의학분야, 작업환경개선분야 등의 관계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아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넷째, 중량물 인양작업의 특별조치에서 제 298조(인양중량의 제한) ---- 가능한 한 , 중량물의.... 과 제 300조 (중량의 표시 등)에서 ---- 가능한 한 다음

각....에서 “가능한 한” 표현은 사업장에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제 법규의 준수와 관리가 어려운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두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 299조(작업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하길 제안한다.

제 299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작업물의 중량, 취급빈도, 수평거리, 운반거리, 작업시간, 기타 작업요소들을 고려하여 중량물의 제한 또는 인간공학적 작업환경제공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결 론

상기의 제안 내용은 근골격계질환관련 법규의 제정이후 최근 인간공학 및 근골격계질환예방관련 교육시간을 통하여 만난 근로자 및 노조관계자들과의 토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현행의 규칙(안)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최소한의 수정·보완을 하려고 노력했다. 향후 시행령 또는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더욱 많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로부터 훨씬 더 발전적인 (안)들이 충분히 개진되어 훌륭한 법규로 탄생되길 기원한다.